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종렬^o

^o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e-mail: park3822@kwu.ac.kr^o

A Study on the Reform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n Korea

Jong-Ryeol Park^o

^oDepartment of Police & Law, Kwangju Women's University

● 요약 ●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을 통한 정비가 되었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많은 선진국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기업경영에 대한 감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와 기업 경영진들에게 그에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오너 경영자의 소유주식 비중이 높은 관계로 의사결정권을 독선적으로 행사하는 등 사실상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이 연구의 목적이다.

키워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이사회제도(board of directors system), 사외이사제도(Independent director system),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지배주주(Controlling shareholder)

I. Introduction

우리나라 대부분 회사는 소자본을 흡수하여 대자본 형성을 통한 자본조달이 편리하게 되었고, 또한 경영과 소유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는 투자에 전담하고, 기업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주 이상적인 회사제도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있는 선진국과 다르게 소유와 경영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에 대한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 기업경영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차원에서 이사회에 대한 영미법상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사회제도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사회제도의 기업지배구조 현재까지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이사회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General Theory of Corporate Governance

1. Concept of Corporate Governance

일반적으로 기업 내부에 대한 의사결정시스템, 경영인과 주주들의 관계, 이사회와 그리고 감사의 기능 및 역할 등을 총칭한다[1]. 광의로는 기업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계되는 근본적인 요소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경영 환경에서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과 시장에 대한 규율, 금융 감시체계, 관습 및 형식 등이 총 망라된다. 협의로는 기업경영자가 이해관계인, 특히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독 및 통제하는 체계 등을 말한다.

2. The Goals of Corporate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의 장비를 위해 가능한 최선의 범위 내에서 스틸링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모색하고 그 집행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비를 위하여 국가의 수단은 스틸링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영인의 지배력 확대를 견제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왔다. 그러므로

기업지배구조는 스티어링을 차단하기 위해 경영권의 사익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정비되어야 한다.

회사설립 이후 이사 선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사 선임기관은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3. History of Corporate Governance

우리나라에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은 1994년부터이다. 그 당시 기업의 지배구조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은 새로운 것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 미국과 일본은 독일의 모델에 대한 연구를 왕성하게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다[2].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의 저성장과 함께 기업경영 감독 역할의 미비로 과잉투자, 낮은 수익 경영과 같은 합리적인 못한 문제들이 기업경영에 산재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전체가 경제위기가까지 이어진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때 드디어 경영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가 중점과제로 활발하게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4. Legislative examples of the board system of each country by country

4.1 Germany

독일 주식회사에 있어서 업무집행기관은 이사회이며, 또한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리고 업무집행권은 모든 이사들에게 공동으로 귀속함으로써 모든 회사업무는 이사의 다수결 결정 방식이 아니라 이사들의 전원 승낙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사회에 있어서 감독기관은 감사회이고, 이 감사회의 제일 중요한 권한은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이사들의 임명권이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이사회는 자신의 책임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법률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제한할 수 없는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3].

4.2 United States

미국에서 회사법제의 기본적인 개념은 소유에 의거 회사를 지배하지만, 회사가 대규모로 성장하면서 주주는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상실하는 소위 소유와 경영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므로 회사 지배권이 주주들로부터 분리되어 이사회로 이동한 것이다[4]. 이처럼 이사회가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이사회가 회사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경영사항을 판단함과 동시에 이사회가 회사 전반에 대한 경영을 수행한다는 것이고, 또 이사회는 임원들이나 사용인에게 업무집행을 위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가장 중요한 경영에 대한 결정 등도 위임할 수 있다.

4.3 United Kingdom

영국에 있어서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는 이사회가 아닌 관리이사이다. 이처럼 관리이사는 실질적으로 회사 내에서 최고 기관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5]. 주식회사 이사회는 기능적 관점에서 일체의 회사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회의체라는 특성 때문에 매일 개회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영국의 회사법에서

4.4 France

프랑스에서는 주식회사의 정관에 의거 일원적 체제인 전통적 이사회제도와 그리고 이원적 제도인 새로운 이사회제도를 선정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이사와 이사회간에 업무집행에 대한 권한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끔 문제가 된다. 또한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역량과 품격에 따라 그의 권한을 다르게 정하는데 가끔 대표이사에게는 강력한 많은 권한이 부여되므로 이에 따라서 그의 권한에 대한 남용이 문제가 된다[6].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목적과 주주총회에서 부여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주식회사 명의로 넓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4.5 Japan

일본은 2002년 상법 개정을 통해서 미국식 일원적인 이사회제도를 채택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경영형태는 기본적으로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은 물론 감독기관인 감사가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설치회사에 있어서는 이사가 이사 및 집행역을 감독하게 된다. 따라서 위원회 설치회사에서는 감사제도를 둘 수 없고, 감사위원회에서 이사와 집행역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권한을 갖고, 종전의 감사가 가진 권한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한다[7].

III. Board of Directors System under Korean Commercial Law

1. Board of Directors Concepts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전체 이사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상설적 필수적 기관이다[8]. 이사회는 회의체기관이며, 회사 업무집행에 대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은 대표이사가 진행한다. 하지만 업무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회사 이사회는 대표이사 및 전체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2. The board of directors of legal status

상법상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의사결정과 모든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한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독립기관이다.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는 그 이사회가 업무집행을 위해 소집하는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로서 이사회회는 개념상 명확히 구별된다. 아울러 자본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서 이사를 1명 내지 2명을 선임 한 경우에는 각 이사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9].

3. Relationship between Board of Directors and Representative Director

회사는 정관에서 주주총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선임된 이사의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 결정과 감독 등에도 참가하게 된다. 또한 이사회는 회사 전반업무의 집행을 결의하며,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상법 제389조 제3항).

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Commerce Council

상무회는 전반적으로 관리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층에 있어서 중요한 일정부문을 이루고 있는 조직이다. 그러나 상무회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그들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 등에 대한 실정법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많은 단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0].

5. Fun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이사회회의 주요 기능은 최고경영자에 대한 조언과 권고 등이다. 또 중요한 주식회사 행위의 승인을 통해 임원진들에게는 이사회회의 승인을 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여 의사결정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형식적으로는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책임에 따르는 긴장을 감소시켜 주는 기능도 한다[11].

6. Responsibility for directors

우리 상법에서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는 수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회사업무를 수행해야 할 충실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12]. 그리고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법정책임이고, 이사의 직무행위가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이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도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IV. Problems and Improvements to the Board of Directors System

1. Problems with the Board of Directors System

1.1 Problems with Supervisory Agencies

우리 상법 제939조 제1항, 제2항에서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회의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이사

의 직무에 관하여 업무집행을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 경영에 대하여 이사회회의 감독 대상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의 지위와 대표이사의 지위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체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이나 경영감독에 대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다. 한편 이사회회의 경영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많은 사외이사를 진입시키고자 하였으나, 추진 미숙 등으로 인해 이사회체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1.2 Problems of the Audit Committee

2009년 상법 개정에서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것만 인정하고 상근감사 설치에 대한 의무가 있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아 상근감사 설치에 대한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에 있어서 일반 감사위원회 제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다른 주주들의 간섭을 배제하고 지배주주 스스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으로서 감사위원회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1.3 Problems of Recommendation of Outside Director Candidates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업무감독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효율적(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내이사는 일반적으로 사외인 및 이사를 겸직하고 있고, 최고경영자의 감독과 지휘를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만 이사회회의 구성원으로서 등기에 기재된 이사라 하더라도 최고경영자로부터 독립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 한편 사외이사 후보는 대주주 그리고 특수관계인이나 경영진들을 통하여 추천되고, 특히 후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학연이나 지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2. Improvement of the Board of Directors System

2.1 Improvement Measures as a Supervisory Body

우리 상법에서 이사회가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실적으로 이사회회의 업무감독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이사회회의 업무에 대한 감사권과 감사의 업무에 대한 감사권의 내용에 관해서는 감사의 감사권이 업무집행에 대한 위법성 사실 여부 외에 경영정책적 관점에서 정당성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두고 분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성질상의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사외이사의 감사에 대한 기능을 주장하더라도 상법상 업무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감사의 존재를 현재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외이사와 감사의 업무감사에 대한 권한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2.2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udit Commission System

1999년 상법 개정에 의거 주식회사는 정관에 정하고 있는 내용에 감사에 대신하여 이사회 내 하나의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만약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감사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직후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위원회에서 기업지배구조모범규칙을 마련하였는데, 이 규칙에 따르면 이사회에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자율적(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였다. 또한 경영진 및 지배주주의 지배하에 있지 않는 자율적(독립적인) 사외이사로 하여금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2.3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for outside directors to be improved

사외이사에 대한 독립적인 선임방식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 상장법인 중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이 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 위원회 총위원의 1/2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산규모가 1,000억 이상인 상장법인으로 확대 반영하고, 상장법인 모두를 상대로 유가증권상장규정 및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등을 통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사외이사후보추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V. Conclusion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이사회와 관련한 문제점은 이사회는 기능적인 측면과 대표이사 등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감사에 대한 기능을 주장하더라도 상법상 업무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감사의 존재를 현재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외이사와 감사의 업무감사에 대한 권한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한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지배하에 있지 않는 자율적 사외이사로 하여금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자산규모가 1,000억 이상인 상장법인으로 확대 반영하고, 상장법인 모두를 상대로 유가증권상장규정 및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등을 통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사외이사 후보추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REFERENCES

- [1] Han Sang-yeol,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Ph.D. thesis at Gunsan University, p.12, 2010.
- [2] Park Se-il, 「Legal Economics」, Park Young-sa, p.495, 1994.
- [3] Choi Joon-sun and five others, 「2007 Ministry of Justice Research Service Task Report」, Ministry of Justice, p.35, 2007.
- [4] Son Sung, "A Theoretical Review of the Law on the Compliance Monitoring System in the U.S. Company Law", No. 43 of the Listing Association, Korean Listed Companies Council, p.300, 2001.
- [5] Jeong Chan-hyung, 「Commercial Law Lecture (Sang)」, Park Young-sa, p.754, 2020.
- [6] Park Sang-jo, "A Study on the Dual Structural Board System under the French Corporation Act", 「The Problem of Korean Commercial Law」, Seol Sung Lee Yoon-sung's Retirement Age Anniversary Papers, p.305, 1988.
- [7] Ahn Sung-po and Lee Joon-woo, "Measures to Improve the Corporate Board of Directors System", Korea Legal Research Institute, p.58, 2004.
- [8] Lee Sang-soo, 「Introduction to Commercial Law (Fourth Edition)」, PNC Media, p.338, 2018.
- [9] Jeong Chan-hyung, 「Commercial Law Lecture (Sang)」, Park Young-sa, p.843, 2010.
- [10] Kim Jin-bong, "A Study on the Standing Committee System of the Board of Directors", No. 9 「Social Science Research」, Seowon University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p.25, 1996.
- [11] Choi Sun-kyu,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Governance Structure of the Board", Master's Degree thesis at Soongsil University, p.34, 2007.
- [12] Jeong Seung-hee, "Legal Study on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Dankook University Master's Degree Paper, p.16, 2007.